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96. 6. 28 화순군수

나. 상 정 일 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양 정 회

나. 제안이유

ㅇ.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개정코자함.

다.주요내용

ㅇ.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ㅇ.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o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개정근거

o 양곡관리법 제19조 관련

3. 주요골자

o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으로 함.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중 "동력의 총계가 5마력"을 "분쇄장치 및 체장치의 능력이 시간당 0.9톤" 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6조 제1항 단서"를 "제19조 제1항"으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을 다음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4조"를 "제21조"로 하고, "별지제3호서식"을 다음 "별지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16조 제2항"을 "제19조 제3항"으로 하고, "별지제4호서식"을 다음 "별지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중 "별지제5호서식"을 다음 "별지제5호서식"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제7호서식"을 다음 "별지제7호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 제분업 - - - - - - - - - - - - - - - - - - -.	제1조(목적) - 제19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분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분쇄정치 및 체장치의 능력이 시간당 0.9톤 - - - -.
제3조(제분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 - - -	제3조(제분업신고) ①법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②양곡관리법시행령제14조의 - -	② - - - - - - - - 제21조 - - - -
제4조(시설의양도임대또는변경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을 신고한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제4조(시설의양도임대또는변경신고) ① - 제19조제3항 - - - - - - - - - - - - - - - - -.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신고서

<table>
<tr><td rowspan="2">신 고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3">설치공장</td><td>설치장소</td><td colspan="3"></td></tr>
<tr><td>업 체 명</td><td></td><td>업 종</td><td></td></tr>
<tr><td>부지면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건 물</td><td>건 물 명</td><td>건 물 구 조</td><td>동 수</td><td>건 평</td></tr>
<tr><td>공 장</td><td></td><td></td><td></td></tr>
<tr><td>창 고</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공능력 (일) 24 시간기준</td><td>구 분</td><td>제 분</td><td>제 병</td><td>비 고</td></tr>
<tr><td>제 품</td><td></td><td></td><td></td></tr>
<tr><td>원 료</td><td></td><td></td><td></td></tr>
</table>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1)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2호서식) 1부.	없 음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신고필증

신고번호　　제　　호

공장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성명

신고업종

가공능력 및 주요시설

가공능력		주요시설							
업 종	1일 ( )시간기준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현행

(별지 제4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양도, 임대, 변경) 신고서

신 고 인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업체명		5) 신고번호		6) 신고일자	
변경사항	7) 내 용		8) 변 경 전		9) 변 경 후	
10) 시공예정기간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 시설(양도, 임대, 변경)을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뒷면 구비종목 참조 2. 신고필증(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 한함.	없 음

현행

(별지 제5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폐지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업 종			
	업체명			
폐지이유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 가공업 폐지를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필증

현행

(별지 제7호·서식)

규모이하제분업 (폐업휴업) 처분통지서

처 분 번 호 　 제 　 　 호

공장소재지

상 　 　 호

대표자성명

처 분 사 항

사 　 　 유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폐업, 휴업)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신고서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치공장	설치장소				
	업 체 명		업 종		
	부지면적				
건 물	건 물 명	건 물 구 조	동 수	건 평	
	공 장				
	창 고				
가공능력 (일) 24 시간기준	구 분	제 분	제 병	비 고	
	제 품				
	원 료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1)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2호서식) 1부.	없 음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신고필증

신고번호 제 호

공장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성명

신고업종

가공능력 및 주요시설

가공능력		주요시설							
업 종	1일 ( )시간기준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table>
<tr><td colspan="7">규모이하제분업(양도, 임대, 변경) 신고서</td></tr>
<tr><td rowspan="3">신 고 인</td><td>1) 성 명</td><td colspan="2"></td><td colspan="2">2)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3) 주 소</td><td colspan="5"></td></tr>
<tr><td>4) 업체명</td><td></td><td>5) 신고번호</td><td></td><td>6) 신고일자</td><td></td></tr>
<tr><td rowspan="2">변경사항</td><td colspan="2">7) 내 용</td><td colspan="2">8) 변 경 전</td><td colspan="2">9) 변 경 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10) 시공예정기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양곡관리법 제19조 제2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 시설(양도, 임대, 변경)을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5" rowspan="2">구비서류
1. 뒷면 구비종목 참조
2. 신고필증(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 한함.</td><td colspan="2">수 수 료</td></tr>
<tr><td colspan="2">없 음</td></tr>
</table>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폐지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업 종			
	업체명			
폐지이유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 가공업 폐지를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필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업 (폐업휴업) 처분통지서

처 분 번 호 제 호

공장소재지

상 호

대표자성명

처 분 사 항

사 유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휴업)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